

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(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(주택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4
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
경우부터 적용한다.

2 개정조문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의2(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)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(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“주택”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<u>임대사업자</u>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</p>	<p>제28조의2(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>----- <u>임대사업자</u>(이하 이 조에서 “<u>임대사업자</u>”라 한다)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